

의안번호	2115413
의 퇴 인	홍문표 의원
회 답 일	2022. 05. 1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413)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구제급여의 종류(안 제5조)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 3의2. 간병비(신설)

□ 간병비(안 제11조의2 신설)

- 간병비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함(제1항)
-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피인정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석면질환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제2항)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향후 5년간 총 38억원 (연평균 7.7억원)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간병비 (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6.7	7.3	7.7	8.2	8.6	38.6	7.7

주: 간병비 대상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2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2
2. 간병비(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3
3. 추계 결과	5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해 간병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2023년에 6억 7,400만원 및 2027년에 8억 6,3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38억 6,700만원(연평균 7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간병비 (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674	729	779	820	863	3,867	773

주: 간병비 대상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 구제급여의 종류(안 제5조)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3의2. 간병비(신설)

□ 간병비(안 제11조의2 신설)

- 간병비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함(제1항)
-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피인정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제2항)
- 간병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남(제3항)
-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음(제4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종류에 간병비가 추가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간병비 대상자에 입원율, 입원일수 및 간호간병통합병동 미이용률, 간병비 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석면피해 인정 질병 중 중증환자에 속하는 악성종괴종, 폐암, 석면폐증 1급을 대상¹⁾으로 간병비 지급 대상 산정
 - 간병비 대상자를 제외하고, 입원율·입원일수 및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률, 간병비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간병비 대상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Ⅳ.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비용추계 대상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간병비 신설에 따른 비용임

1) 「석면 건강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중,
: 호흡기장애 3급이상이면서 의사소견서상 병원내 치료(수술 등) 후 연속해서 간병이 필요한자에게 국한하여 지원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인정 질병 중 석면폐증(1급)이 호흡기장애 3급 이상에 해당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sum_{t=2023}^{2027} \text{석면피해 구제급여 간병비}_t^{1)}$$

이때, t 는 추계기간(2023~2027년)

- 1) 간병비 대상자에 입원율·입원일수 및 간호간병통합병동 미이용률, 간병비 단가를 곱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재정소요 38억원 추계
- 대상자(2023년 기준 915명) × 입원율 30% × 입원일수 50일 ×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률 75% × 간병비 단가 (65,523원)

2. 간병비(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간병비 대상자에 입원율·입원일수 및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률, 간병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

- 간병비 대상자를 제외하고, 입원율·입원일수 및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률, 간병비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대상자) 환경부 제출자료인 석면피해 대상 인정자 추계 자료를 참고하여 2023년 915명 및 2027년 1,172명 등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간병비 대상자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표 2] 석면피해 대상 인정자 추계

(단위 : 명)

연도	합계	원발성 중피종				석면 폐암				석면폐증 1급			
		소계	신규	계속	만료	소계	신규	계속	만료	소계	신규	계속	만료
2023	915	201	68	139	57	520	151	392	104	194	30	170	18
2024	989	215	75	147	60	567	159	431	113	207	31	182	19
2025	1,058	232	83	158	64	607	167	458	131	219	32	193	20
2026	1,113	251	91	170	71	631	175	463	161	231	33	204	21
2027	1,172	273	100	185	76	657	184	492	146	242	33	214	22

주: 석면피해구제기금 2022년~2026년 중기사업계획(안)의 중기 구제급여 지급규모 예측 자료 참조
(인정자 산정: 신규인정자×0.5 + 계속수급자 + 수급만료자×0.5)
자료: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제출자료

- (입원율 및 입원일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1년도 석면폐증 1급이상 일반병원 입원현황을 참고하여 입원율 30%, 입원일 50일로 가정

[표 3] 2021년도 석면폐증 1급이상 일반병원 입원현황

2021년 수급자수(명)	입원일수(일)	입원인원수(명)	평균입원일	입원률(%)
718	9,975	214	50	30%

자료: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제출자료

-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율) 2021년 8월 기준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율 조사결과 78%이나, 환경부에 따르면 향후 이용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율은 75%로 가정
- (간병비 단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간병비 지급 기준과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자의 전문간병인 고용율을 참고하여 간병비 단가는 65,523원으로 가정
 - 환경부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자의 전문간병인 고용율은 70%, 가족간병율은 30% 정도임
 - $67,140\text{원} \times 70\% + 61,750\text{원} \times 30\% = 65,523\text{원}$

[표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간병비 지급 기준

간병필요등급 간병인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간병 4등급
전문 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미지급
가족, 전문간병인 외의 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미지급

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 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간병비 (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대상자수 (A, 명)	915	989	1,058	1,113	1,172	5,247	1,049
입원율 (B, %)	30	30	30	30	30	150	30
입원일수 (C, 일)	50	50	50	50	50	250	50
간호간병통합병실 미이용율 (D, %)	75	75	75	75	75	375	75
간병비 단가 (E, 원)	65,523	65,523	65,523	65,523	65,523	327,615	65,523
추가재정소요 (F=A×B×C×D×E, 백만원)	674	729	779	820	863	3,867	773

주: 간병비 대상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해 간병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2023년에 6억 7,400만원 및 2027년에 8억 6,3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38억 6,700만원(연평균 7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간병비 (안 제5조제3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674	729	779	820	863	3,867	773

주: 간병비 대상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	지수현
연 락 처	02-6788-3735
	zisu37@nabo.go.kr
